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4두469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
피고,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
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4누44436 판결
판 결 선 고 2018. 3. 29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

제111조 제5항 및 제8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"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."고 규정하면서, 제1호에서 간접비용 중 하나로 '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'을 들고 있다.

이처럼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).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 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,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,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.

2. 가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(1) 원고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. 12. 9.부터 2010. 5. 14.까지 고양시

(주소 생략) 외 581필지 529,248.34㎡ 및 건물 1,766.22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 299,250,005,675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(2)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,088,712,259원(이하 '이 사건 지급이자'라 한다)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.

(3) 피고는 2010. 12. 14.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 및 처분신탁보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85,861,270원, 농어촌특별세 36,941,510원, 등록세 447,519,260원, 지방교육세 89,502,600원(각 가산세 포함)을 각 부과하였다(그중 이 사건 지급이자와 관련한 부분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나.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의 성격과 그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3.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소멸된 이후의 지급이자도 기업회계기준의 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전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, 이 사건 처분 중 2006. 1. 23.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,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.

4.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조재연

 대법관 고영한

주 심 대법관 김소영

 대법관 권순일